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0가단475574, 2014가단12841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 중간확인의소]

전 문

원고(중간확인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중간확인원고) A

변론 종결 2015. 7. 3.

판결 선고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원고)는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121,178,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2.30.부터 2010. 10.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중간확인의 소를 통틀어 피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 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중 간 확 인 의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518 가압류결정문[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중간확인소장에서 갑 제1호증으로 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을 제2호증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피고는 갑 제2호증으로 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을 제1호증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을 확인하고,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피고는 갑 제3호증으로 표기하였으나 이 사건 을 제3, 6호증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의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

- 1) B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1, 2순위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52억 2,000만 원)부 채권 공매 절차에 참가하였다. B은 2003. 6. 24.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 2) 피고는 2003. 7. 29. B과 피고가 D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그 배당금에서 공매 대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이하 이 사건 배당이익 균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약정 등

- 1) 피고는 2003. 11. 21. 이 사건 배당이익 균분약정을 근거로 B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받을 배당금청구권 중 26억 5,500만 원[=(경매 배당금 152억 2,000만 원 - 공매 대금 99억 1,000만원)÷2]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2013. 11. 24.

보험가입금액 10억 6,200만 원, 피보험자 B으로 한 공탁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 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11. 25. 위 가압류 신청(서울지법 동부지원 2003카합2518)을 인용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3. 11. 28.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B에게 152억 2,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B은 위 가압류로 배당금 중 26억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04. 5. 11. 가압류 이의 신청(서울동부지법 2004카합876)을 하였다.

다. 가압류 본안 소송 경과 및 B의 가압류 배당금 수령

1) 피고는 위 가압류 신청과 함께 B을 상대로 가압류 금액 26억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법 2003가합10504)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05. 1. 7. 이 사건 배당이익 균분약정은 피고의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이를 취소한다는 B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법 2005나13969)되었고, 상고장도 각하되어 2006. 6. 29.경 피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피고는 가압류 본안 패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서울고법 2011재나313)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0. 재심소장이 각하되었다.

2) 가압류 이의 사건(서울동부지법 2004가합876)에서 위 가압류 결정도 2005. 1. 7. 취소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05. 3. 23.경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가압류 집행은 2005. 1. 31. 해제되었다.

3) B은 2005. 2. 15. 위 가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배당금 26억 5,500만 원을 공탁 이자 54,138,387원과 함께 수령하였다.

라. 부당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경과

1) B은 2005. 1. 6. 피고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209,589원 등합계

449,905,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법 2005가합211)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2006. 10. 13. B의 청구금액 중 약 3억 원을 인용하면서 B이 배당금 26억5,500원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배당금수령 시 받은 이자를 뺀 107,707,503원을 피고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의 청구 중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B에게 107,7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6.부터 2006.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은 항소장 각하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법2011재가합36, 서울고법 2012나94775, 대법원 2013다58651).

마. 원고의 공탁보증보험금 지급

B은 서울동부지법 2005가합211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300,403,91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 판결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보증 대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 원고는 2006. 12. 29. B에게 배당금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121,178,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6, 18, 35~43, 74, 75, 8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하였거나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중간확인의 소로 구하고 있다.

1) B과 피고가 이 사건 배당이익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을 1)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피고는 이를 소명자료로 하여 B의 경매 배당금 중 26억 5,500만 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을 받았다.

2) B이 관련 사건에서 제출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을 3, 6)는 위 · 변조된 것이다.

B은 위법한 위 약정서(을 3, 6)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고,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서울동부지법 2005가합211)에서 위와 같이 승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문서들의 진정 성립 여부가 확인되면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피고의 지위가 해지되는 한편 원고가 보험금 지급 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

나. 판 단

1)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이러한 중간확인 소는 소송 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따라서 중간확인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간확인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 소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본소 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내용은, 피고의 가압류 상대방인 B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확정 판결을 기초로 그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한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소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결문제는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절차상의 문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는지이다(이러한 사항들은 본안 청구에서 판단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별소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중간확인 소로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을 1)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을 3, 6)는 B 이름 옆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피고 이름 옆의 인영 유무 등 작성 명의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당 이익금을 균분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같다. 피고가 가압류 본안

소송(서울동부지법 2003가합10504)에서 패소한 것은 B이 배당 이익 균분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B이 그 약정을 취소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을 제3, 6호증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변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한 판단은 작성 명의 인의 의사에 의하여 문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성 명의인의 의사가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다.

다) 한편 피고가 가압류 본안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된 이상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성립을 원인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들의 진정 성립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이 직접적으로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본소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다. 피고가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 심리를 거쳐 판단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문서들의 진정 성립 여부가 피고의 본안 청구 당사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문서들의 진정 성립 여부가 원고가 보험금 지급 전 피고에 대한 통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대항사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 결

피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그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 책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B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송사기 또는 보험사기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B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위조한 근저당권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를 첨부하여 서울동부지법 2005가합211 판결을 받은 것은 소송사기이다. 또 B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보험사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7, 14, 16, 18, 20, 46호증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B의 소송사기 또는 보험사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서울동부지법 2005가합211 판결은 피고와 B 사이의 배당 수익 균분 약정 최소로 가압류 본안 소송이 피고 패소로 확정됐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B이 피고 주장의 약정서를 위 판결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라고 하기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압류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지위에 있다. B이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지위에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두고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민법 제445조에 따른 대항 사유 유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수감 중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면 원고는 보험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4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민법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보증인의 통지 의무 위반 자체로 구상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구상권이 제한되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원고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B의 확정 판결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 전 통지 미이행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부족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험금 청구 시효 도과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B은 2004. 5. 11. 피고의 배당금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B은 보험금 청구 시효 2년이 지난 2006. 12. 27.에서야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시효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 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 단

(1) 가압류 부당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상 확정된 것을 안 때이다(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626 판결 참조).

(2) 피고의 배당금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5년경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B이 2006년경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일부터 보험금 청구시효 2년 이내에 한 것임은 역수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21,178,31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0. 10. 21.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민